

수일	접수자	변호사
10/4	[Redacted]	

수원지방법원

제 30 민사부

결정

사건 97카합4400 전환사채권 전환금지가처분

신청인 [Redacted]
[Redacted]

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1.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Redacted]

2. 삼성물산 주식회사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피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Redacted]
[Redacted]

제 3 채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주 문

1. 피신청인들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전환사채에 관하여 각 전환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각
양도, 질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된다.

2. 제3채무자는 위 전환사채에 대하여 이를 주식으로 전
환해 주어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증권회사의 위탁매매를 이용하여 상장법인인 제3채무자의 주
식을 매수하여 이 사건 신청 당시 제3채무자의 주식 [REDACTED]주를 보유한 제3채무자
의 실질주주이다.

나. 제3채무자는 전자·전기·기계 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법인으로서 1997. 3. 31. 현재 자본금은 574,

121,855,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합계 114,824,371주로서 의결권 있는 보통 주식이 90,930,944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23,893,427주(1주의 금액 5,000원)이고,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삼성 그룹의 계열회사이다.

피신청인 [REDACTED]은 [REDACTED]으로서 제3채무자의 주식 3,497,888주(지분 3.8%)를 보유한 지배주주인 신청의 [REDACTED]의 [REDACTED]이고, 피신청인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제3채무자의 주식 3,310,218주(지분 3.6%)를 보유한 삼성 그룹의 계열회사이다.

다. 제3채무자는 1997. 3. 24. 이사회를 개최하여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사모(私募)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 총액 600억원, 만기 2002. 3. 23., 전환가격 50,000원, 전환기간 1997. 9. 25.부터 2002. 3. 23., 이자율 연 7%로 된 별지 첨부사채 목록 기재 무기명식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고 한다)를 발행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피신청인 [REDACTED]에게 450억원 상당을, 피신청인 삼성물산에게 150억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피신청인 [REDACTED]은 제3채무자의 주주가 아니나, 그에 대한 발행은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3채무자의 정관 제16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라. 위 600억원 상당의 전환사채 전액이 전환될 경우에 발행되는 주식은 피신청인 [REDACTED]에게 900,000주, 피신청인 삼성물산에게 300,000주가 된다. 이

에 따라 피신청인 [REDACTED]은 그 지분이 0.98%가 되어 자연인으로는 위 [REDACTED]
그의 처인 [REDACTED]에 이어 제3대 주주가 되고, 피신청인 삼성물산의 지분은
3.9% 정도로 늘어난다.

2. 피보전권리에 관한 판단

먼저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현행 상법상 전환사채 발행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는 하나, 전환사채는 전환권의 행사에 의하여 장차 주식으로 전환
될 수 있어 이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주 발행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한 상법
제429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이사·감사에 한하여 회사를 상대
로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이 상당하다. 따라서, 제3
체무자의 주주인 신청인은 제3체무자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무효 청구권을 피
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전환권 행사 또는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전환사채의 발행이 정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
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전환사채의 발행은 사실상 신주 발행으로서

의 의미를 가지므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거나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를 제3자 또는 특정 주주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이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거나 주주평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라는 실질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REDACTED]는 제3채무자의 지분을 3.8% 정도 보유하고 있으나, 계열 회사인 피신청인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제3채무자의 지분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이용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3채무자가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계열회사의 경영권도 지배하고 있는 점, 위 [REDACTED]이 이 사건 전환사채 중 450억원 상당을 인수할 수 있었던 자금은 당초에 위 [REDACTED]로부터 증여받은 61억원 등 증여세로 납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억원으로 위 [REDACTED]가 등일인으로서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삼성 그룹의 계열회사 중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상장된 후에 이를 처분하여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비추어 소명되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삼성 그룹의 기업지배구조상 위 [REDACTED]로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의 행사를 통하여 1996년 기준 매출액 15조 8,000여억원, 당기순이익 1,641억원에 이르는 제3채무자의 대주주가 되어 장래 제3채무자 및 이를 통하여 삼성 그룹 전체의 사실상의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반면에, 제3채무자의 재무구조나 영업실적, 자금조달 현황을 볼 때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주에게 배정하거나 공모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굳이 제3채무자의 지배주주인 위 ~~■■■■■~~의 아들 또는 계열회사로서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피신청인들에게 배정하지 않으면 자본 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이 소명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은 제3채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보다는 제3채무자를 지배하는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으로,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본안 재판에서 제3채무자의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사이에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을 행사하여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거나 이를 처분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볼 것인바, 그로 인하여 일반 주주들 및 제3채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전환권의 행사나 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소량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에 비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나 처분하여 투하 자본을 회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신청인들에게 미치는
손해가 더 막대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들이 투자의 목적으로 이 사건 전환
사채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가처분으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할 우려는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신청
인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로서는 이 사건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의 행사 또는
처분으로 인하여 주주의 사원권적, 재산권적 이익이 현실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보다 커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답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9. 30.

제판장 판사 이홍복

1. 발행인 : 삼성전자 주식회사

2. 사채의 명칭 :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140회 부보증 사모 전환사채

3. 사채의 종류 : 무기명식 아관부 무보증 전환사채

4. 발행일 및 납입기일 : 1997. 3. 24.

5. 사채의 발행 총액 : 600억원

6. 사채의 발행조건 :

가. 발행 가격 : 사채권면액의 100%

나. 사채권면액 : 금 10억원 1종

다. 사채의 이율 : 연 7%

라. 이자 지급 방법 : 매 사업연도 말 후급(발행년도 발행이자는 일할계산)

마. 원금상환방법 : 2002. 3. 24. 일시상환

바. 보장수익률 : 연 9%

7. 사채의 주식 전환에 관한 사항

가. 전환조건

1) 전환비율 : 각 사채권면액의 100%

2) 전환가격 : 50,000원

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다. 전환청구기간 : 1997. 9. 25.부터 2002. 3. 23.까지, 끝.

판 사 이 영 전

판 사 품 대 식